

제조물 책임과 보험에 관한 연구

박 영 배* · 김 종 수**

요 약

최근 제품으로 인한 각종 피해에 대해 피해자 구제의 견지에서 피해자가 간편하고도 용이하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피해입증부담을 경감하고, 제조업자를 포함한 제품공급자측에 보다 엄격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한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 PL)”에 대한 법률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PL과 보험간의 관계를 고찰하여 우리 나라의 최근동향 및 대응방안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미국에서는 손해보험회사의 급격한 수익악화로 인하여 각 사가 일제히 기존의 보험계약 인수를 거절하여 보험요율과 보험료를 대폭적으로 인상하여 기업들이 배상책임보험을 부보할 수 없는, 소위 “보험위기”라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과거 두 번에 걸친 심각한 보험위기의 교훈으로 미국에서 세 번째의 보험위기의 발생유무는 제2차 보험위기의 원인이었던 미국의 불법행위법·불법행위제도의 개혁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제조물에 대해 피해자 구제를 구울하는 PL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 향후에 우리나라가 PL법을 제정하여 실시할 경우에는 미국과 같은 혼란된 상태에 빠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 구제와 기업이 안전 제품의 생산에 자극을 줄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나라에도 PL법을 제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동의대학교 상경대학 경제학과

** 명지대학교 경영무역학부

I. 서 론

제2차 세계대전후 현재까지 전세계적으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각종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자동차의 경우 기어의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 사람의 폐에 흡수되면 발암성이 있는 석면(asbestos), 공작기계 또는 약품 등에 의해 신체의 일부분이 훼손되는 등의 다양한 형태를 들 수 있다. 이같은 경우,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더라도 소액의 위로금으로 피해보상을 끝내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최근들어 각종 공업제품의 사용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사건 등이 빈발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를 보면 「카네미 油症 사건」¹⁾, 「SMON사건」²⁾, 「THALIDOMIDE 사건」³⁾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제품으로 인한 각종 피해에 대해 피해자 구제의 견지에서 피해자

-
- 1) 「카네미」는 쌀기름을 제조판매한 일본회사로서, 쌀기름 제조에 사용되는 열매체인 「폴리염화비닐(PCB)」을 주성분으로 하는 「카네크롤400」이라는 합성화학물질이 기름속에 혼합되어 이를 식용으로 사용한 소비자가 피부, 신경 등에 질환을 수반하는 전신질환의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이 소송에서 제조회사측이 총액 9억 8,238만 엔의 배상을 명령받았다(1977년, 후쿠오카 지방재판소).
 - 2) SMON(Subacute Myelo Optico Neuropathy)건은 일본 27개 지역에서 원고가 1만 명이상이나 되는 대형소송사건으로 제약회사(타케다제약공업, 일본치바이거) 및 제약판매회사가 제조, 판매한 키노호흡제를 소비자들이 섭취한 결과, 그 부작용으로 아급성척추신경병(SMON)에 걸려 하반신 마비, 시력장애 등의 신경증상이 발병한 것으로, 제조·판매회사 및 제조를 인가, 승인한 후생장관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본건에서는, 당초 그원인에 대해서 「바이러스설」이 유포된 적도 있었지만, 결국 키노호흡제와 신경증상의 인과관계 및 피고들의 과실이 각각 인정되어, 결국 총액 4억8,796만엔의 배상의무가 명령되었다. 또한 1987년에 동경지방재판소에서도 피고 제약회사, 판매회사 및 국가에 대해 총액 35억 9,565만엔의 배상의무를 명령받고 있다. 그외 후쿠오카, 교토, 시즈오카 등에서도 동일 내용의 소송이 제기되었다.
 - 3) 1960년 Thalidomide제제를 임신초기에 복용한 산모로부터 후천성의 장애아(환자수, 서독: 2,500명, 영국: 310명, 일본: 309명으로 여러나라에서 동시에 피해자가 발생)가 탄생된 사건이다.

가 간편하고도 용이하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피해입증부담을 경감하고, 제조업자를 포함한 제품공급자측에 보다 엄격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한 “제조물 책임”에 대한 법률이 필요하게 되었다.

「제조물책임 (product liability: PL)」이란 용어는, 원래 영미법적 체계를 갖는 국가의 관례법(common law)에서 파생되어진 한 분야로서 「제품에 의해 소비자 및 기타 제3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끼친 피해에 대해 제품공급자가 지는 불법행위 책임」을 말한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 향후 기업들이 PL에 따른 기업 리스크를 어떻게 회피, 또는 최소화해야 하는지에 대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방안의 하나로 대부분의 기업은 자사제품에 의한 사고에 대해 PL보험을 부보하여 이러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PL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실제로 손해배상금의 지불을 담당하는 보험회사가 보험회사 자신을 위해 「재보험」을 가입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⁴⁾ 보험회사의 이러한 행위는 보험요율을 인상시키고, 또는 보험회사가 PL보험의 인수를 거절하는 예도 증가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미국처럼 PL소송의 홍수사태까지 진전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국내용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생산물 배상책임 보험」에 의한 보험요율도 미국의 PL보험만큼 높지 않기에 보험회사가 보험의 인수를 거절하는 사태도 발생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PL사고 건수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PL에 대비한 보험의 중요성은 매우 중요하며, 기업들은 「해외용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을 구입하여 PL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보험회사가 인수하고 있는 PL보험에는 해외용제품, 즉 사고발생지가 해외의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다. 이것은 수출된 제품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

4) 미국의 경우 석면에 의한 피해소송이 많다. 1989년의 경우 전체 PL소송 중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나, 석면사용금지조치로 인하여 최근에는 소송건수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상책임에 따라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기업활동의 국제화에 따라 제조기업이 해외에서는 현지법인 또는 지점을 설립하여,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경우 상대국의 보험회사와 직접 PL보험계약을 체결하여 PL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PL과 보험간의 관계를 고찰하여 우리 나라의 최근동향 및 대응방안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PL법을 완성시켰고 PL법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PL보험의 상세한 내용 및 PL보험과 Captive보험에 대해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PL보험의 위기를 맞고 있는 미국의 보험산업에 대해 검토하고 제5장에서는 우리 나라 PL법의 최근동향 및 대응방안을 살펴본다. 본 논문의 결론은 제6장에 제시한다.

II. 미국에서의 PL발전과정

전술한 바와 같이 PL법은 영미법 체계를 갖는 국가(특히 영국과 미국)들의 판례법에서 발전해온 불법행위법의 한 분야로서, 「제조 또는 판매된 제품이 소비자 및 기타 제3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끼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 제품공급자의 책임」을 의미한다.

과거에 생산된 제품은 단순한 것이 많아, 구입자는 충분히 제품을 검토할 수가 있었으며, 또한 제품이 원인으로 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도 그 부담은 당연히 매수인에 의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영미법에 말하는 「매수인의 위험부담, 즉, 매수인주의」(Caveat Emptor)라는 원칙이 이것이다. 즉 매수인은 매도인의 과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것을 과실책임의 원칙이라고 한다. “과실이 없으면 책임 없음”이라는 이 원칙은, 환언하면 가해자 측이 통상적인 주의만 기울이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증한 것으로 근대 공업발달

과정에서는 기업으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매우 엄격한 미국에서도 20세기 중반까지 PL은 과실책임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들어 제품의 종류가 현저히 증가되어 생활이 편리하게 되어진 반면 제품의 내용자체도 복잡하고 고도의 기능을 지닌 것이 많아졌다. 또한 제품의 다양화에 따라 조작도 어려우며, 사용설명서(manual)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그 기능을 알 수 없는 고기술(high technology)제품도 많아지고 있다. 더구나 취급방법 미숙에 따른 실수로 인한 위험이 수반되는 제품도 상당수 생활 속에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현대사회는 제품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품에 대해서 보다 고도의 지식을 갖는 매도인측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매도인의 위험부담, 즉, 매도인주의」(Caveat Venditor)라는 원칙으로 법률이 전환된 것이다.

그와 동시에 현재 거대 자동차제조업자 및 식품제조업자 등으로 변신한 과거의 제조업자들은 재산적 규모에서 보아 배상부담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제조물책임이 제조업자측에 부과되는 국가로 간주되고 있지만, 이는 미국이 대량생산·대량소비의 선두주자임을 감안한다면 그리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미국의 제조물책임사건에서 획기적인 판례는 1963년 캘리포니아주 최고 재판소에서 판시된 그린맨(Greenman)사건⁵⁾이다. 본 건에 따르면 피해자는 제조업자의 과실에 대한 입증을 필요로 하지 않고 단지 제품에 결함이 있었다는 것만 입증하면 되게 되었다. 이는 피해자 구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이를 미국에서는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으로 부르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엄격책임의 근거를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

① 손해의 분산: 최근의 제품은 소비자에 피해를 끼칠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발생한 피해는 그 제품의 편리성을 향유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분

5) 본 건은 1955년 Greenman氏가 선물받은 다목적용 조립공구의 위험성으로 인해 법원에 제소한 사건으로, 1957년에 “보증책임에 대한 계약법상의 제반문제를 제조업자에게 묻는 PL법에 대한 새로운 판결이다.”

산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제조업자측에서는 그 위험도를 제품 내용에 추가하여⁶⁾ 이용자 전체에 분산 할 수 있다.

② 피해자의 증명책임 완화: 과실책임에 기초를 둔 이전의 법률체계에서는 피해자측이 제조업자측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전문지식을 갖지 않은 일반 피해자에게는 매우 어려운 것이라 할 수 있었다. 현재의 법은 과실의 입증에서 결함의 입증으로 전환하여 그 불합리를 해결한 것이다.

③ 사고억제: 제조업자측은 시장경쟁을 이겨내기 위해 보다 안전하며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다 안전한 제품은 시장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필수적인 사항이며 안전에 대한 엄격한 책임의 부과는 안전한 제품의 공급을 촉진시켜 사고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

④ 제품의 안전성: 제품은 대량으로 제조되어 대중매체를 통해 널리 광고되고 있다.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소비자로서는 일방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제품을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며, 제품에 대한 안전성의 요구는 높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조업자에게 보다 엄격한 책임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전술한 그린맨 판결이 내려진 시대적 배경으로서는, 미국에서의 소비자 보호사상의 고조를 들 수 있다. 즉, 1962년 3월에 발표된 케네디 대통령의 특별교서에서는 소비자의 4가지 권리를 선언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 ① 위험한 제품에서 보호받을 권리
- ② 부정확한 정보 및 선전 등에서 보호받을 권리
- ③ 많은 종류의 제품 및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 ④ 소비자의 소리를 행정에 반영시킬 권리

위의 내용은 소비자의 안전을 요구하는 권리가 처음으로 명확하게 기술된 것으로서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6) 이것을 보험에 전가할때는 보험료 상당분을 추가하여야 한다.

III. PL보험

1. 보험의 필요성

PL문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조물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러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두는 것이 계속적인 기업활동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피해발생의 사후대책으로서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등이지만, 손해배상의 경우 소송으로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제품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의 범위 및 방법에 따라 손해에 대한 배상의 방법도 달라진다. 또한 소송이외의 방법에 의해 배상의 책임이 발생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화해로 끝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소송으로 비화되어 패소하게 되면 거액의 배상을 해야 한다.

또한, 화해라고는 하지만 최근의 예로 보면 고액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소송을 어떻게 승소하는 문제도 과제이지만, PL위험에 대한 예방대책의 강구 및 사전에 재판대책과 재판방법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패소한 때에는 배상금을 지불하여야 하므로 PL보험을 부보하는 것도 그 대책의 하나이다. 보험금은 소송에 패소한 경우뿐만 아니라 화해가 성립한 때 등 법률상의 의무를 진 때에도 지불된다.

기계 또는 제품의 상태가 좋지 않아 직접손해를 입는 소비자 또는 피해자는 대부분의 경우에 개인이다. 그래서 이러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자는 해당하는 상품을 판매 내지 제조한 기업밖에 없으므로, 소비자보호의 입장에서 이들 기업은 그 책임을 져야 한다.

기업은 자사 제품에 의한 피해의 경우 시장에서 소비자들로부터 추궁을 받게 되고, PL소송은 대부분의 기업에게 기업책임을 초월한 불리한 결과로 작용되어 재판에 패소하여 도산하게 된다. PL문제와 관련하여 기업이 도산하는 배경으로서는 ① 보험대책을 의식적으로 하지 않았던 경우, ② 아직 PL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시대에 제조된 제품이 현재까지 사용되어 그 제품에 의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③ 제품의 생각지도 않은 용도에서 상태가 좋지 않아 배상을 요구받은 경우, ④ PL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지도 않은 사건에 연루된 경우 등이 있다.

결과적으로 복잡화된 사회와 제조물에 의한 피해의 대형화에 따른 소비자 보호의 대책으로 기업측에서는 배상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배상책임보험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2. 보험의 손해와 이득

보험의 손해와 이득의 계산은 직접적인 금액평가에다 금액으로 평가할 수 없는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여 손해와 이득을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나라의 경우 보험을 구매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보험을 부여한 것에 대해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돈을 사용한 것에 저항감을 느끼는 것과 동일하다. 보험을 구매해도 눈에 보이는 것은 보험증서뿐이므로 그것이 돈이 되지 않으면 가치로서의 인식이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돈이 되는 때는 사고가 발생한 때뿐이다. 이때 비로소 보험의 감사함을 인식한다.

그래도 최근에는 이러한 인식에 대해 점차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나 아직 보험과 자신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실이다. 즉, 보험의 손해와 이득에 대한 평가에 대한 사고는 아직 내 자신과는 무관한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어서 의미가 없게 된다.

여기서 보험에 대한 발상의 관점을 바꾸어, PL사회는 위험사회라는 점과 위험사회에서는 보험이 필수적인 것으로 단순한 종이조각인 보험증권도 생존을 위한 태환지폐로 보면 그 가치를 재인식 할 수 있다. 안전과 공기는 공짜로 얻을 수 없는 것이 지금의 사회이며, 여유가 없는 좁아진 지구상의 가치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험의 경제적으로 유리한지의 계산은 위험을 평가하는 수식으로 결정된다. 그것은 위험이 발생한 경우 손해의 크기와 발생확률을 곱한 것. 즉 [손해의 크

기(손해액)] × [발생확률]의 수치와 보험료와의 비교에 의해 계산할 수 있다.

어쨌든 과거의 발상을 전환하여 보험기간이 무사히 경과한 때에는, 안전에 투자를 한 것에 의해 시장실적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시장정보의 취득료로 이해하는 것에 의해 보험부보의 손해를 보았다는 생각을 불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보험료는 당연히 제품의 제조원가에 추가되어야 하며, 또한 안전한 상품을 만들기 위한 예방대책비도 원가에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PL보험을 들면 손해보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점에서 장점이 있다. 보험을 부보하는 것에 의해 얻어지는 장점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① 손해보상은 보험을 구입한 시점의 계약에 의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불받는다.
- ② 보험계약한 대상제품에 대해 소송이 제기된 때 변호사의 선정 등 재판과 관련된 지원 및 재판과정에서 보험회사를 활용할 수 있다.
- ③ 손해보험회사로부터 평상시의 PLP(제조물책임예방)에 대한 조언 또는 재판 정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 ④ 해외에서의 경우, 손해보험회사의 해외클레임 대리점 및 PL전문 변호사, 조사원 등을 필요에 따라 현지에 파견하여,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문제해결이 가능하다.

위의 ①의 경우를 제외하고 얻을 수 있는 특전 내지 유사시의 대응으로서 정 보수집·조사연구 등의 준비를 하는 것은 개별기업에서 처리하기가 매우 어렵다. 보험회사는 자신의 회사가 보험으로 손해를 보아서는 안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손해배상을 적게 하는가에 서비스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 예측 불가능한 사태에의 대비와 재판상의 수속 등의 보조, 재판에 승소하기 위한 전략 등에 대해서도 협력을 얻을 수 있으며, 소송이 제기되어도 소환장을 보험회사에 제시하면 보험회사가 들보아 준다.

이들의 상담 또는 재판정보, 재판상의 진술기술, 재판상의 기술표현, 전문적인 조사 등과 같은 일들을 개별기업이 독자적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매우 힘

들고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개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비용과 PL보험료간의 손익비교를 해보면 보험을 구입하는 것이 유리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는 보험회사에 따라 그 내용과 수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우량 보험회사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외에서의 문제처리는 정보의 수집, 재판장소 또는 물건의 성질에 따라 실질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보험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3. PL보험의 개념

보험을 대별하면, 인명에 관련되는 생명보험과 물적손해를 취급하는 손해보험으로 분류할 수 있다. PL보험은 후자에 속하는 배상책임보험에 포함된다.

우선 PL보험의 대상⁷⁾으로는 ① 피보험자가 제조 또는 판매한 제조물에 따라 입은 신체장애는 재물손괴에 대해서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이다. 즉, 제조 또는 판매한 제품에 의해 발생한 타인의 신체장애 또는 타인의 물적손해에 대해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겼기 때문에 부담하는 것에 의해 발생한 손해이다.

여기서 신체장애란, 보통의 신체상의 장해를 말하지만, 신체의 장해에 이르지 않는 정신적 충격 및 명예훼손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물적장애란, 대상으로 하는 제조물 이외의 유체물에 대한 물리적 손상을 말하며, 이것에 의해 유체물체의 사용을 할 수 없는 것에 의해 입는 사용불능손해 (loss of use)가 발생된 때도 포함된다. 여기서 발생한 사고는 기명 피보험자의 시설이 아닌 곳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하며, 또한 제조물의 실제의 소유자가 제3자간에게 이전된 것이어야 한다. ② 배상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재판비용, 변호사 보수, 화해해결비용 등, ③ 재물손괴에 의해 발생한 당해물의 사용불능손해인 휴업손

7) 영국의 경우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장애 및 재물손괴에 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에 의해 손해를 보상하나, 신체장애 및 재물손괴를 수반하지 않은 순수한 경제적 손해는 보상되지 않지만 특약을 부보하면 보상될 수 있다. 또한, 단순한 정신적 충격 및 프라이버시의 침해 등을 신체장애의 정의에 포함하여 보상하고 있는 보험회사도 있다.

해, 일실(逸失)이익 등이다.

다음으로, PL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는⁸⁾ ① 대상 생산물자체의 손해, ② 하자(결함)가 있는 제조물 등의 recall비용(조치회수, 교환, 파기 등에 필요한 비용), ③ 사용자의 사용상황의 검사비용, 수리비용의 지출 등에 의한 피보험자의 손해, ④ 제조업자, 구매자, 사용자의 사용불능에 의한 손해, ⑤ 벌금, 위약금, 징벌적 배상금, ⑥ 피해자의 업무상 재해, 전문직업의 위험, 계약에 의해 가중된 배상손해, 공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핵물질의 유독성에 기인하는 배상손해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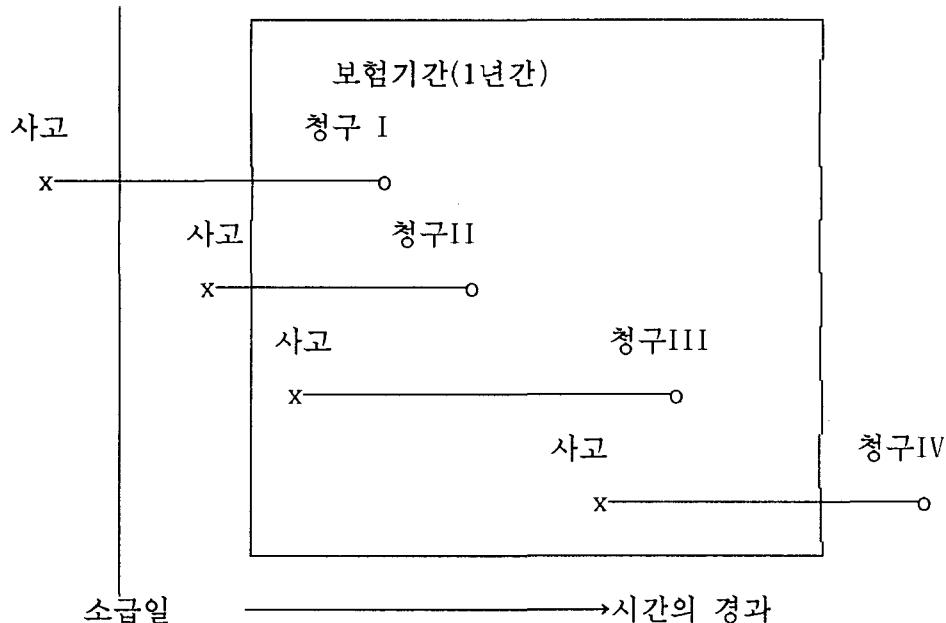
다음으로 PL보험의 적용조건으로는 약관에 의해 처리되지만 PL보험의 적용되는 장소는 예를 들면 제품의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국이 되며 사용 또는 소비하는 목적으로 수출되는 수출국에서 발생한 신체장애, 재물손괴를 보험의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소비물자는 수출국에서 다른 곳에 수출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약관에도 따르지만, 최초의 소송이 보험적용지역 또는 국내에서 제기된 경우는, 사고가 어디에서 발생했다하더라도 적용되게 된다.

보험의 적용은 소급일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의해 보험기간 중에 배상청구를 받은 것을 근거로 보험사고를 대상으로 하는 “Claim Made Basis” 방식과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를 대상으로 하는 “Occurrence Basis” 방식이 있다. 어느 방식을 적용할지는 계약시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Claim Made Basis”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보험계약 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그 사이에 배상청구가 있었던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들의 관계에 대한 개념도는 <그림 1>과 같다.

8)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었지만, 영국을 비롯한 각국의 경우마다 상이한 경우가 있다.

<그림 1> 보험 대상기간개념도



주) 청구 I : 사고가 소급일이전이기 때문에 보험대상이 안됨.

청구 II :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계약에 포함시킬 것

청구 III : 대상이 됨

청구 IV : 청구가 보험기간외이기 때문에 대상이 안되지만, 계속계약을 하면 대상으로 됨.

그런데 보험으로 지불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보상한도액(보험증서에 명기되어 있는 대로 보험자가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책임을 지는 최고한도액)이내이다. 보상한도액은 계약에 따라 결정되지만, 사고마다의 한도액을 결정할 수도 있으며, 1인당 한도액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 또한 손해가 소액인 경우는 면책으로 하는 방법도 있다. 이러한 조건은 보험료와 연계되어 결정된다. 보험료는 보험기간중의 대상품목의 총매상고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4. Captive보험과 PL보험

기업에서 보험료를 지불할 때, 보험료는 損金취급이 되지만, 그 보험액을 회사내에 저축하면 그 적립금은 손금취급이 안되고 과세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사업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저렴한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그곳으로 보험료를 지출하고, 보험을 부보한다. 이 보험회사는 자산을 운용하며 이익을 올린다. 그것에 의해 기업그룹으로서는 이익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Captive를 만드는 국가로서는 베뮤다, 싱가폴, 홍콩 등이 유명하다. Captive보험회사의 취지는 재무관리(risk management)에서 재무정책(risk financing)을 고려할 때, Captive란 보험으로서의 지출을 자회사에 하고 세계상의 특전을 살리면서 그룹으로서 유리한 이익을 향유하려는 것이다. 진술한 대로이지만 PL보험 단독의 Captive가 어느 만큼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의 경우 유효한 존재라고는 할 수 없다. PL보험을 위해서는 위험분산형, 즉 다른 업종집단 그룹에 의한 고동조합제의 예가 있다. 미국에서 IBM, GM 등의 대기업 33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케이만군도에 공동보험회사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Captive이든 그룹제의 보험회사이든 우리 나라에서는 만들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해외에 만드는 것은 비교적 용이하다. Captive를 만드는 데에는 의미가 없지만, 대기업 등에서는 자산운용상 유리한 점도 있다.

5. PL보험정책과 기업운영

우리 나라의 경우 국민들의 보험 가치인식에 아직은 적극적이지 못하기에 보험을 구입하는 데에는 강제적인 경우 혹은 경험에 따른 절실한 경우 등으로 구입을 하게 된다. 특히, 비생산적인 지출은 낭비라고 생각하는 기업의 경우 임의 보험인 책임보험을 구입하기 위한 이해를 얻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

그러나 최근의 대부분의 수출제조업자는 PL보험을 구입하는 것이 상식으로 되어 있어 보험을 어떻게 유리하게 구입할지를 연구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 안정경영을 하기 위해 유사시 보험을 계획적으로 도입하고 안전대책을 위한 비용

은 원가에 추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어쨌든 위험발생을 대비해 대책을 강구해 두는 것이 기업 경영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일 것이다.

손해보험업계의 대부분은 대리점제도를 취하고 있다. 보험을 구입할 때는 대리점을 경유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대리점은 보험브로커로서, 피보험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업자와 교섭하거나 보험구입의 상담을 해 주는 곳이 있다. 특히 PL보험은 보험료가 비싸며, 보험회사도 적극적으로 인수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손해보험 등과 보험의 편성을 하며 안전을 유리하게 인수해 주는 보험회사를 찾는 방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IV. 미국의 PL보험 위기

현재 세계 각국의 PL법은 PL선진국인 미국의 법률을 대부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이상적인 법률인 미국의 법률은 사회적으로 혼란이 야기된 적이 있었다. 즉 제조업자 등에 너무 엄격한 판결이 계속해서 행해지고, 또한 고액의 손해배상금이 인정되는 사태도 발생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종합 배상책임보험(이 보험은 PL보험도 담보하는 보험)의 인수를 거절하게 된다면 피해의 사회적 분산기능이 상실되어 극단적인 경우 제조업자는 업무정지를 할 수밖에 없다.⁹⁾

「타임」지가 1986년 3월 24일 「미국민 여러분, 당신의 보험은 취소되었습니다」 ("Sorry, America, Your insurance has been canceled")라는 표제어를 달 만큼 위기적인 사태로까지 발전한 것이다.

이것을 「배상책임 보험위기」라고 부르지만, 이 배상책임 보험위기의 원인 규명과 해결을 위해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1986년과 1987년에 보고서를 제출

9) 1986년의 배상책임 보험위기는 제조업자의 PL문제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의 업무에 영향을 주었다. 예를들면, 뉴욕시의 맨하탄과 루즈벨트섬을 연결하는 케이블카도 배상책임료가 폭등하였기에 (1985년에 80만달러에서 900만달러로 10배이상 증가됨) 영업이 정지되면서 많은 불편을 겪었다.

하였다. 이 보고서의 내용 중 판결이 지나치게 과하게 행해진 경우가 소개되어 있다.

예를 들면, 오브라이언사건¹⁰⁾의 경우 타인의 정원에 불법 침입한 것으로 생각되는 원고가 비닐재의 수영장에 뛰어들어 증상을 입은 사건이다. 제조업자는 「뛰어들지마」라는 경고 표시를 측면에 부착했지만, 원고는 인접해 있는 2.4m의 차고에서 뛰어든 것으로 생각되어 측면의 경고는 보이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가 송소했다. 또한, 빅비사건¹¹⁾은 가해자가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다 전화박스에 충돌하여 박스 내에 있던 피해자가 증상을 입은 사건으로 피해자는 전화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캘리포니아주 최고재판소는 술에 취한 운전 수의 과실행위에 대해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하고 오히려 전화박스에 자동차가 충돌 할 예전가능성이 있는 것에 주목하여 전화박스의 설계, 설치 및 유지에 대해 전화회사인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여 원고승소를 인정했다.

위의 두 가지의 사건은 미국에서 PL판결의 대표적인 사례인데, 지급능력이 있는 피고 및 손해보험회사와 같은 소위 "deep pocket"을 겨냥해 실질적으로 손해배상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쪽으로 악영향을 끼친 판결이라 생각된다. 두 가지의 사례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의 보고서에서도 지나친 판결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배상책임보험위기는 제품의 공급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 미식축구의 헬멧제조업자는 1976년의 18회사에서 1985년 3개의 회사로 격감했다. 또한 트램펄린(탄력있는 4각형의 천을 이용해 도약·공중제비 등을 하는 운동, 또는 그 기구)용품 및 아이스하키의 방어용품의 제조업자는 미국국내에는 소멸되었다.

- 버지니아주의 어느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충분한 배상책임보험의 계약이 가

10) O'Brien v. Muskin Corp., 94 N.J. 169, 463 A. 2d 298 (1983).

11) Bigbee v. Pacific Tel. & Tel. Co., 34 Cal. 3d 49, 192 Cal. Rptr. 857, 665 P. 2d 947 (1983)

능할 때까지, 신제품의 판매는 미루기로 했다.

- 파이퍼, 세스나와 같은 미국의 2대 경비행기 제조업자는 보험료의 양등으로 인해 국내생산을 중지하고 있다.
- 살社는 배상책임보험을 계약할 수 없게 되자 PL소송의 위협으로 인해 상품(피임구)을 회수한다고 발표했다.

Conference Board社가 500인의 경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앙케이트조사에서도 <표 1>에서와 같이 생산라인의 정지 및 신제품의 발매중지가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문제가 미국의 산업 및 미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PL문제의 영향

영향	회답(%)
공장폐쇄	9
종업원의 일시해고	16
생산라인의 정지	47
신제품의 발매중지	39
흡수합병의 중지	22
제품의 개발연구중지	25
해외생산에의 이행	4
시장점유율 감소	22

주) 회답자수 264사(위의 %는 해당하는 항목에 영향이 있다고 회답한 기업의 비율)

자료 : The Impact of Product Liability(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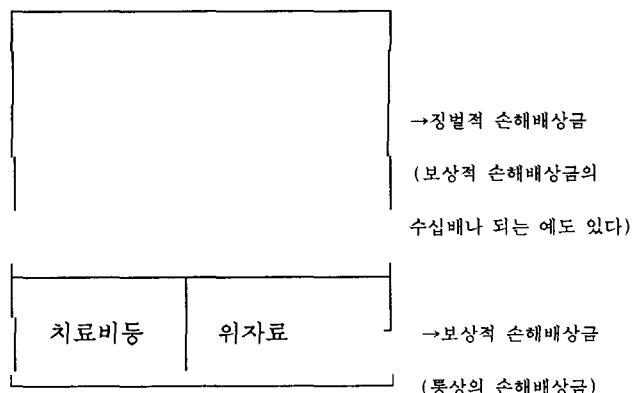
단지 불법행위법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외경쟁력의 저하에도 관련 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의 보고서는 결론으로서 책임규칙의 명확화, 위자료, 징벌적 손해배상금 등 비경제적 손해배상금의 상한설정, 노동재해보상 등 종복 보상의 방지, 원고변호사의 성공보수의 체감, 다액의 변호사비용을 삭감하기 위한 대체적 분쟁처리기관(ADR)의 활용 등의 8항목의 불법행위개혁을 제

안하고 있다. 현재 이를 연방법으로 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중에서 개혁안이 제정되면 위자료·징벌적 손해배상금등 비경제적 손해배상금의 상한 설정 등의 문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미국에서만 인정되는 손해배상금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은 피고측에 중대한 악의가 있을 경우 징벌적인 이유로 통상의 손해배상금에 추가로 덧붙이는 것이지만 최근의 PL소송에서는 쉽게 인정되는 상황이며, 대규모의 제조기업에서는 골치아픈 문제로 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금은 재정적 규모가 큰 피고에만 부과된다 <그림 2> 참조). 문제는 위자료와 징벌적 손해배상금은 산출의 근거가 없어 배심원의 합의로 결정되기에 미국에서 손해배상금의 양동원인이 되고 있다.

<그림 2> 미국의 손해배상금 개념도



주) 사선의 부분이 비경제적 손해배상금이다.

한편 부시대통령때 케일부통령은 PL 등 소송사회에 의한 미국경제의 부담은 직접비용 800억달러, 간접비용을 포함하면 3,000억 달러나 되며, 국민경제에 주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PL을 포함하는 불법행위법 개혁을 하자는 호소가 있었다.

그러나 연중행사처럼 매년 법안은 제출되고 있지만, 법의 성립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견해가 많다. 1993년에 개시된 제103의회에서도 1992년에 상원에서 폐기된 카스텐법안을 이어받은 「제조물 책임 공정법안」(S 687)을 롤펠러 상원의원이 중심이 되어 제출하고, 또한 하원에서도 동일한 입법의 추진 움직임이 있었지만 소비자단체 등의 반대로 1994년 6월에 폐기되었다. 제104의회에서는 1995년 3월에 하원보회의에서 소송개혁 3법안(변호사 책임법안, 증권소송 개혁법안, 상식적 제조물 책임개혁 법안)이 가결되었다. 이 중에서 상식제조물 책임 개혁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금의 상한을 25만달러 또는 보상적 손해배상금의 3배 중 높은 액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변호사책임법안에서는 화해를 거부해 재판을 할 때, 화해시의 손해배상금 보다 소액의 손해배상금밖에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측의 부분도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하원의안보다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제한하고 있으며, 상한을 높은 금액으로 하고 있다 (종업원이 25명미만의 기업인때는 25만달러 또는 보상적 손해배상금 2배 중에서 낮은 금액으로 하고 있다).

개별로 발전해온 판례법(Common Law)을 중시하는 미국사회에서는 이런 종류의 연방법의 제정에 대한 저항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연방법은 심의 중이어서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이 움직임은 쟁의 제정법의 신설을 촉구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7년 동안에 징벌적 손해배상금 상한설정, 원고변호사의 성공보수의 개선, 근거가 없는 소송에 대한 제재, 중복보상의 제한, 대체적 분쟁처리 기관(ADR)의 창설 등을 중심으로 판례법의 지나침에 제동을 걸기위해 대부분의 주에서 제정법이 성립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주 수준에서의 법의 개정에서는 당연한 것이지만, 미국의 근본적인 문제 - 예를 들면 80만명 이상의 변호사가 활약하는 사회이며 배심제도가 채택되고 책임의 유무의 판단 및 손해배상금은 배심원에게 위임되어 있는 점 등 - 가 해결되지 않으므로 변함없이 우리 나라의 수출기업에 곤란한 상태는 계속 될 것 같다.

V. 우리 나라의 최근 동향

우리 나라에서는 엄격책임을 규정한 제조물책임법은 현재 제정되어 있지 않으며 제조물책임은 1958년에 제정된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는 식품위생법(1986년 전면개정, 1991년 개정), 공중위생법(1986년 제정, 1991년 개정), 약사법(1963년 제정, 1991년 개정), 유독물법(1963년 제정, 1980년 개정) 등 특정분야의 제품에 대한 소비자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은 소비자피해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법규이며 피해 발생후의 민사책임에 관한 실체법이 아니므로 이를 법률의 대상품목에 대한 제조물 책임도 우리나라 민법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

그런데 1970년대의 고도경제성장에 따라 제품사고에 의한 소비자피해의 방지, 구제 방법이 사회문제가 되어 책임원칙을 과거의 과실책임에서 엄격책임으로 전환하는 제조물 책임법의 입법화로 발전하고 있다.

최근의 동향으로서는 1989년에 소비자보호원이 연구보고서 「제조물책임법시안」을 발표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규정의 도입 및 개발위험의 항변의 부정, 손해배상조치 등의 경우 일본의 제조물 책임법 요강시안과 같이 과거의 제제안의 영향을 받고 있는 점도 있지만, 1982년 법안¹²⁾과 달리 EC지령의 내용에 따른 규정이 많이 존재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아니라 시안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것을 발표한 것이 소비자 보호원이라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직기관인 점에 커다란 의미가 있으며, 재경원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 정부의 향후 대응에 대해 영향을 끼칠 것은 틀림없는 것이다.

12) 우리나라 정부는 과거부터 산업보호정책을 추진했지만, 소비자 피해의 실태 및 소비자 운동의 영향에 따라 많은 변화가 생겨 소비자보호법이 1980년 1월에 제정 (시행은 1982년 9월, 1986년 12월에 대폭개정) 되었다. 1982년에는 1975년에 공포 된 “제조물책임법 요강시안”을 바탕으로 새로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통과 하지 못했다. 이후 제조물책임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동 시안이 법령으로 제정될 경우, 기업으로서는 과거보다 엄격한 책임부담을 강요당하게 되어 PL대책을 위한 조직신설·강화나 주력제품에 대해 보다 높은 안전성 기준을 규정하고 취급설명서 및 제품본체의 경고표시를 고치거나 또는 안전상 의문시되는 제품의 상품화를 뒤로 미루는 등의 대책이 취해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많은 기업에서 어떠한 형태든 PL대책이 강구되어질 것이다. 기업으로서는 현재 취해지고 있는 대책이 전사적인지? 효율적인지?의 유무를 재검토하여, 만약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실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21세기에 있어 규제완화는 지속적으로 진전되고 있기에 소비자의 선택폭은 지금보다 확대될 것이 예상된다.

이처럼 소비자 앞에는 다종다양한 제품이 나열되어 경쟁하게 되겠지만 새로운 시대의 현명한 소비자는 가장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기업은 그것에 부응해 더한층 안전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도 제품사용에 관해 기업측이 의도한 사용방법을 충분히 숙지하여 안전한 소비생활을 할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VI. 결론

미국의 경우 PL보험은 필수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에서는 손해보험회사의 급격한 수익악화로 인하여 각 사가 일제히 기존의 보험계약 인수를 거절하여 보험요율과 보험료를 대폭적으로 인상하여 기업들이 배상책임보험을 부보할수 없는, 소위 “보험위기”라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보험위기는 미국 사회에서 매우 심각한 사회적·경제적 혼란을 야기시켜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제1차 보험위기의 원인을 PL보험의 보험요율산정방법의 부적절함, 제품의 설

계·품질관리의 불충분, 불법행위제도의 부정확 등에 있다고 보고 그 개선책으로서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엄격책임법리제한 등의 제언을 함과 동시에 연방 또는 주의 제조물 책임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¹³⁾

주 및 연방에서 제조물책임을 중심으로 제1차 보험위기의 원인이 된 불법행위제도를 개혁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된 즈음에는 제1차 보험위기는 종식되었다.

제2차 보험위기(1984-1986년)는 제1차 보험위기를 훨씬 상회하는 심각한 것이었다. 제2차 보험위기의 요인은 다음의 내용이 복합되어 발생한 것이다. 손해보험업계의 내부요인으로서는 Cash-flow Underwriting¹⁴⁾의 파탄, 계약자잉여금의 감소에 따른 인수능력부족 등이 있으며, 외부요인으로서는 불법행위책임의 급격한 진전과 법적 안정성의 결여에 있다고 보고 이 위기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전술한 8개 항목의 불법 행위개혁이 추진되었다. 불법 행위법에 있어서 문제점이 된 것은, 무과실책임(no-fault liability)에의 이행, 인과관계의 탄력화, 인정배상금액의 양등, 극단적으로 높은 거래 비용(transaction cost)을 들고 있다.

각 주 및 연방의 불법행위개혁은 손해보험회사의 업적개선에 따른 제2차 보험위기의 종식으로 최근까지 커다란 성과는 얻어 내지 못하고 있다.

제1차 보험위기의 종식 때와 마찬가지로 배상책임보험의 합산비율(combined ratio)의 저하와 손해보험회사의 업적개선을 계기로 하는 Underwriting cycle의 상승추세의 개시와 함께 손해보험회사의 업적 개선을 계기로 하는 Underwriting cycle 기준이 완화되기 시작하여 심각한 2차 보험위기도 종식되었다. 과거 두 번에 걸친 심각한 보험위기의 교훈으로 미국에서 세 번째의 보험위기의 발생유무는 제2차 보험위기의 원인이었던 미국의 불법행위법·불법행위제도의 개혁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제조물에 대해 피해자구제를 규율하는 PL법이 제정되어

13) 이 제언의 일부는 1979년 10월 31일에 제조물 책임 모델법 (Model uniform Product Liability Act)으로 공표되었다.

14) 보험회사가 보험료 자금에서 최대한의 이자수입을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요율의 산출과 보험료의 징수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다.

있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지나친 PL소송을 억제하고 손해배상금을 감액할려고 하는 상황이다. 향후에 우리 나라가 PL법을 제정하여 실시할 경우에는 미국과 같은 혼란된 상태에 빠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구제와 기업의 안전제품의 생산에 자극을 줄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우리 나라에도 PL법을 제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PL對策プロジェクトチ ム 「製造物責任法のすべて」損害保険企劃, 1995年.
- 千代田國際經營法律事務所編 「製造物責任」 第一法規, 1990年.
- 内蘇篇澤「アメリカ製造物責任法」木鋼社, 1995年.
- 大宏一「米國の製造物責任と懲罰賠償」日本經濟新聞社, 1995年.
- 東京海上研究所編 「製造物責任法大系I」(理論篇)弘文堂, 1994年.
- PL研究所編 「輸出企業のためのアメリカ製造物責任寧情」東洋經濟新報社, 1990年.
- 木村榮一藍譯「保險辭典」損害保険事業總合研究所, 1996年.
- 吉本英雄 「世界における製造物責任法」日本海運集會所, 1994年.
- 法務大臣宮 房司法法制調査部編 「諸外國における製造物責任法」法曹會, 1992年.
- 長谷天俊明譯 「製造物責任の混亂」保險毎日新聞社, 1991年.
- 金光良美 「米國の保險危機」保險毎日新聞社, 1987年.
- Fisher, D.A. & Powers, W. Jr., "Products Liability- Cases and Materials", 2nd ed., Minnesota, 1994.